

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91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25.

발의자 : 이만희 · 박덕흠 · 권성동

김선교 · 이양수 · 서천호

김기웅 · 구자근 · 정희용

권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서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4에이치활동은 7세부터 39세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 제3조의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과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, 그 밖의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4에이치 관련 정책 집행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또한, 4에이치활동을 통해 어린이, 청소년, 청년들이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, 청년, 청년농업인까지

확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업 미래세대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조, 제2조)

주요내용

가. 법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, 청년과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함(안 제1조)

- 4에이치활동 참여자가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함

나. 4에이치활동 대상 확대에 따라 4에이치활동의 주체를 어린이, 청소년, 청년, 청년농업인으로 명확히 함(안 제2조제1호제2호)

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”를 “어린이, 청소년, 청년, 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”로, “국가발전”을 “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근거한”을 “근거한 어린이, 청소년, 청년 및 청년농업인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한민국 <u>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어린이, 청소년, 청년, 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</u> ----- ----- <u>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-----.</u>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는</u>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“4에이치활동”이란 4에이치 이념에 <u>근거한</u>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. <p>가. ~ 라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근거한 어린이, 청소년, 청년 및 청년농업인의</u> ----- -----.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